



국세청

National Tax Service

국 세

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

한국세무사회	결재
접수일자	2020-02-18
접수 청	국세청
주무과	
담당자	

정부혁신
보다 나은 정부

수신 한국세무사회장 귀하.

(경유)

제목 2020년 「근로소득 간이세액표」 개정 안내

-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.
- 근로소득금액 계산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(2천만 원)가 신설됨에 따라, 월급여 3천만 원 초과자의 간이세액표의 세액 산출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

기 존		개 정	
월급여 구분	세액	월급여 구분	세액
28백 만원 ~ 45백 만원	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6,585,600원+(2,800만원 초과금액*98%*40%)	28백 만원 ~ 30백 만원	(좌 동)
45백 만원 초과	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13,249,600원+(4,500만원 초과금액*98%*42%)	30백 만원 ~ 45백 만원	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7,385,600원+(3,000만원 초과금액*40%)
		45백 만원 초과	월급여 1천만원인 경우의 세액+13,385,600원+(4,500만원 초과금액*42%)

- 이에 따라 2020. 2. 11. 개정된 「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시행령 별표2)」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시스템에 게재하였으니, 원천징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소속 회원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국세청 홈페이지 > 성실신고 지원 > 원천징수(연말정산)안내 > 근로소득 간이세액표
- 국세청 홈택스 > 조회/발급 > 기타조회 > 근로소득 간이세액표

. 끝.